



: 2017-05-01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6두346 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1. A

2. 재단법인 B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행정자치부장관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14. 선고 2011누40709 판결

판 결 선 고 2017. 4. 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민족규명법'이라 한다) 제2조는 '친일반민족행위'를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행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하면서 제1호부터 제20호까지 친일반민족행위를 열거하고 있고, 그 중 제11호는 '학병·지원병·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 또는 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를, 제17호는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를 들고 있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아래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1)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징병제도실시 감사축하대회 참석, 징병·학병 찬양 및 선동행위에 관한 판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원심판결 별지1 목록 순번 ① 기재 행위는 학병·지원병·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 또는 선동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망인의 W연맹의 발기인·이사·위원·참사 등 활동, CO연맹의 상무이사·이사·참사·평의원 등 활동에 관한 판시 사실관계에 의하면, 망인의 원심판결 별지1 목록 순번 ③ 기재 행위는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3) 비록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3·1운동에 참여하고 G사나 H학교 등을 운영하면서 민족문화의 보존과 유지 및 발전에 기여한 성과가 적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나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친일행위의 주도성·적극성을 감쇄시킬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다. 따라서 망인의 위 각 행위가 반민족



규명법 제2조 제11호, 제17호의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 부분은 적법하다.

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은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타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반민족규명법 제2조 제11호, 제17호의 친일반민족행위 및 그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반민족규명법 제2조 제13호는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아래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1) 어떤 행위가 반민족규명법 제2조 제13호의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하면 족하고,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할 목적으로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직접 조직·운영할 것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같은 조 제10호, 제17호, 제19호, 제20호와의 문언상의 차이를 고려할 때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하는 행위는 단순한 가담이나 협조를 넘어서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주동하는 위치에서 이끄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2) 망인의 S단체 준비위원, T단체 발기인 및 감사로서의 활동, 라디오 시국강연과 AW 일원에서의 시국인식 강연, 군용기 건조비 헌납, 매일신보를 통한 원호사업 협력



주장에 관한 판시 사실관계에 의하면, 망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문화 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거나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주동하는 위치에서 이끄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원심판결 별지1 목록 순번 ② 기재 행위가 반민족규명법 제2조 제13호의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 부분은 위법하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령 및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반민족규명법 제2조 제13호의 친일반민족행위 및 그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 신

주 심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이기택